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조례 제3779호(2004.10.4)로 제정된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중 일부규정에 대한 사업변경 및 필요한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중 “신생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현행 법령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4조)
- 종전의 시장이 에너지합리화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심사하도록 하고 심의 계획기간을 명시하여 에너지 이용 및 절약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11조)
- 에너지위원회 기능에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함(안 제15조)
-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중 공영주차장에 대한 10부제를 승용차 요일제로 변경하여 현 운영에 맞도록 조정함(안 제1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18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자                     | 해당 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
| ○주 소:<br>○성 명:<br>○연락처: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11조제3항 중 “보고”를 “심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 실시계획을 심사하고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최종 심사 확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마련”을 “마련,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자문”으로 한다.

제18조제2호라목 중 “10부제”를 “승용차요일제”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 4. (생    략)<br>5.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에너지 · 풍력 · 바이오에너지 · 소수력 · 조력 · 해양에너지 및 지열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등 신 에너지를 말한다. | 제4조(용어의 정의) -----<br>-----<br>-----.<br>1. ~ 4. (현행과 같음)<br>5.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 물 · 지열 · 강수 ·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
| 6. ~ 18. (생    략)                                                                                                                                                    | 6. ~ 18. (현행과 같음)                                                                                                                                                                                           |
| 제11조(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br>① · ② (생    략)<br>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 계획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에너지위원회에 <u>보고</u> 하여야 한다.<br><u>&lt;단서 신설&gt;</u>                               | 제11조(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br>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 <u>심사</u> -----.<br><u>다만,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 실시계획을 심사하고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최종 심의 확정한다.</u>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br>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br>1. · 2. (생 략)<br>3. 에너지 행정의 민 · 관 협력 방<br>안 마련<br><br>4. ~ 7. (생 략)                                                                                                                                                          | 제15조(기능) -----<br>-----.<br>1. · 2. (현행과 같음)<br>3. -----<br>----- <u>마련, 에너지이용합</u><br><u>리화 실시계획 자문</u><br>4. ~ 7. (현행과 같음)                                                                                  |
| 제18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br>공공부문의 효율적 에너지 절약<br>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에너지<br>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br>1. (생 략)<br>2.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 활<br>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br>항을 적극적으로 권장<br>가. ~ 다. (생 략)<br>라. 공영주차장에 대한 <u>10부제</u> 자<br>율참여 제도 및 참여차량에<br>대한 주차요금 할인<br>마. · 바. (생 략)<br>3. · 4. (생 략) | 제18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br>-----<br>-----<br>가. ~ 다. (현행과 같음)<br>라.----- <u>승용</u><br><u>차요일제</u> -----<br>-----<br>마. · 바. (현행과 같음)<br>3. · 4. (현행과 같음) |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                                                                                                                                                                                                                                                                                                                                                                                                                                                                                                                                                                                                                              |
|--------------|------------------------------------------------------------------------------------------------------------------------------------------------------------------------------------------------------------------------------------------------------------------------------------------------------------------------------------------------------------------------------------------------------------------------------------------------------------------------------------------------------------------------------------------------------------------------------------------------------------------------------|
| 관계법령         | <div style="margin-bottom: 20px;"> <input type="checkbox"/> 에너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목적)</li> <li>○ 제2조(정의)</li> <li>○ 제4조(국가 등의 책무)</li> <li>○ 제5조(적용 범위)</li> <li>○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li> <li>○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li> <li>○ 제10조(위원회의 기능)</li> </ul> </div> <div style="margin-bottom: 20px;"> <input type="checkbox"/>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목적)</li> <li>○ 제2조(정의)</li> <li>○ 제4조(시책과 장려 등)</li> <li>○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li> <li>○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li> <li>○ 제32조(권한의 위임 위탁)</li> </ul> </div>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 별지 작성”</p> |
| 관련조례<br>정비대상 |                                                                                                                                                                                                                                                                                                                                                                                                                                                                                                                                                                                                                              |
| 관련자료         |                                                                                                                                                                                                                                                                                                                                                                                                                                                                                                                                                                                                                              |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에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를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또는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